

예 산 총 칙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2,330,027	11,169,901
일반회계	345,680,602	10,370,418
특별회계	26,649,425	799,483
공기업특별회계	15,856,945	475,708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856,945	475,708
기타특별회계	10,792,480	323,77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1,576	16,247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813,076	54,3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06,411	69,192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21,417	9,64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10,000	174,3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3,12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